

# NEWSLETTER

January 2021

산업안전·중대재해팀  
Occupational Safety  
: Major Accidents Team

## CONTACT



변호사 배재덕

T: 02.772.5960  
E: [jaedeog.bae@leeko.com](mailto:jaedeog.bae@leeko.com)



변호사 설동근

T: 02.772.4881  
E: [tongkeun.seol@leeko.com](mailto:tongkeun.seol@leeko.com)



변호사 김용문

T: 02.772.4797  
E: [yongmoon.kim@leeko.com](mailto:yongmoon.kim@leeko.com)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국회 통과

2021. 1. 8. (금)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재해 시 기업의 경영책임자 등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주요 골자로 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산업재해와 관련된 사업주의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이 2020. 1. 16. 시행된 이후 아직 실무상 혼선이 있는 상황에서 처벌 범위와 수위를 더욱 강화하는 법안이 통과된 만큼, 지속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규정 내용 개요

구분	내용
(1) 목적(제1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대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li> </ul>
(2) 처벌대상 중대재해 개념의 정의(제2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대재해를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li> <li>■ <b>중대산업재해</b>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 개념을 차용·확장(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발생,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li> <li>■ <b>중대시민재해</b> 특정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대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으로 발생한 재해(사망자가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li> </ul>
(3) 안전 및 보건 확보조치 의무 주체의 확대(제2조, 제4조, 제5조, 제9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주뿐 아니라 ‘경영책임자등’의 개념을 추가로 정의하여, 사업 대표자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의 주체를 확장</li> <li>■ ‘사업주’란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영책임자등’이란 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의 장</li> </ul>
(4) 적용범위(제3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개인사업주에 한함)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적용 제외</li> </ul>
(5)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규정(제4조 내지 제11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안전보건 조치의무등과는 별도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이행하여야 할 의무를 신설</li> <li>■ 중대시민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신설</li> </ul>
(6) 도급, 용역, 위탁 시의 의무 확장(제5조, 제9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등을 행한 경우에도 그 시설, 장비, 장소등을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제3의 종사자에게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여야 함</li> </ul>
(7) 형사처벌 등의 강화 (제6조, 제7조, 제10조, 제11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급, 용역, 위탁등을 포함하여)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위반으로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i) 사망 사고의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산업안전보건법상으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ii) 사망 사고 외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산업안전보건법상으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iii) 형 확정 후 5년 이내 재범 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li> <li>■ 법인 양벌규정에는 별도 법정형을 규정 i) 중대재해 중 사망사고 시 50억원 이하의 벌금 (산업안전보건법상으로는 10억원 이하 벌금), ii) 사망사고외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산업안전보건법상으로는 5천만원 이하 벌금)</li> <li>■ 안전보건교육 수강명령의 병과 (위반 시 5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li> </ul>
(8) 징벌적 손해배상 (제15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용자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 발생 시 해당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이 중대재해 피해자에게 손해액의 5배 범위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짐 (법인 또는 기관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한 경우는 제외)</li> </ul>
(9) 시행 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칙) 공포 후 1년 경과 시 시행, (예외)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근로자 50명 미만 사업(장),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공포 후 3년 경과 시 시행</li> </ul>

## 2. 경영책임자등을 포함한 안전 및 보건 확보조치 의무 신설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 또는 대표이사에게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증진시킬 의무를 부여하면서도 구체적인 안전보건관리책임의 이행에 관하여는 현장소장, 공장장 등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제15조, 제38조, 제39조 참조). 이에 따라, 실제 사업장에서 안전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때 대표이사 등 전체 사업의 대표자가 아닌 현장소장, 공장장 등 현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을 위주로 법적 제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대해 대표이사 등 전체 사업의 대표자를 처벌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노동계등의 요구가 지속되었고, 이에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i)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ii) 중앙행정기관장, 지자체장, 공공기관장 등을 포괄하여 ‘경영책임자등’으로 정의하고, 사업주뿐 아니라 경영책임자들에게 보다 구체적인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의무규정 비교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b>사업주</b> (제38조, 제39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망라된 구체적인 안전보건조치의무	<b>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b> (제4조)	(i)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ii)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iii)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iv)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i) 및 (iv)호의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b>대표이사</b> (제14조)	매년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할 의무		

#### [관련 이슈]

- 당초 발의된 5개 법률안들에서는 대표이사 및 실질적 영향력 행사자 등을 특정하여 의무를 부여하였으나, 법안 심의과정에서 의무의 주체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기존과 같이 현장관리자 내지 현장의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등만을 그 제재 대상으로 삼는 것이 허용되는가 하는 점에 관한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당초 법률안에서는 경영책임자들에게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사업주에게 부과하고 있는 직접적인 안전보건조치의무를 부여하였으나, 법안 조율과정에서 이와 같이 광범위하고 구체적인 의무는 삭제되고 예산편성 등 주로 포괄적 경영관리상의 의무로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가 명시되었습니다. 하위 법령으로 보다 구체화될 예정이기는 하나, 현장에서의 직접적인 의무와는 비교적 구분되는 경영관리상 의무가 부여될 것으로 보입니다.

### 3. 중대시민재해 규정 신설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 사망사고와 같은 산업재해뿐 아니라 가슴기 살균제 사건, 세월호 사건과 같은 시민 사고에 대해서도 관련 대표자 등을 처벌하고자 중대시민재해를 새로 정의하여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책임져야 하는 중대재해의 개념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기존에도 「화학물질관리법」, 「화학제품안전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설물안전법」, 「제조물책임법」 등 현장의 사업주, 관리 담당자를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법률이 적용되고 있으나,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에 관한 직접적 의무를 부과하고 이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구분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중대시민재해가 앞서 본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가중된 처벌규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4. 도급인 등 의무 범위의 확대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등을 행한 경우, 당해 사업주등이 실질적 지배·운영·관리 책임이 있는 시설, 장비, 장소에서 발생한 제3자 소속 종사자의 중대산업재해와 당해 사업주등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장)에서 생산·제조·판매·유통 중인 원료나 제조물의 설계, 제조,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한 중대시민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도, 사업주등이 안전 및 보건 확보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으로 확장된 도급인의 책임과 유사한 의무라고 볼 수 있으나 산업안전보건법이 도급인의 사업장으로 평가할 수 있는 장소 중 22개 위험장소의 근로자들에 대해서만 도급인의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는 점과 구분됩니다.

의무규정 비교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b>도급인의 안전보건 조치의무</b> (제63조)	도급인의 사업장(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경우로서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22개 위험 장소를 포함)에서 수급인 근로자 작업 시 수급인 근로자를 포함하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망라된 구체적인 안전보건조치의무부담	<b>도급, 용역, 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의무</b> (제5조, 제9조)	도급인의 사업장 작업인지 여부를 불문하나, 수급인 등 업체의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 책임이 있는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확보조치의무부담

#### [관련 이슈]

- 중대재해처벌법이 도급 등의 경우 그 시설, 장비, 장소에 관한 '실질적인 지배·운영·관리 책임이 있는 경우'로 의무를 한정하는 단서 규정을 추가하면서 산업안전보건법과 그 적용대상에 관한 장소적 개념에 있어서는 특별한 차이가 있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역시 작년 전부 개정 이후 구체적인 제재 사례가 축적되지 못하여 실제 사안에 있어 수급업체의 사업장이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22개 위험장소'에 해당하는지 혼란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상으로도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 책임이 있는 경우'에 관한 해석상 유사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5. 중대재해 발생에 관한 처벌의 강화

앞서 본 바와 같이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사고 시 1년 이상의 징역형 등 하한 규정을 두고, 개인에게는 10억원 이하의 벌금형, 법인에 대하여는 50억원 이하의 벌금형 규정을 두는 등 이미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을 통해 강화된 처벌 수위를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다만 이와 같이 강력한 처벌을 가하는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의무위반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것인지 여부를 면밀히 따지게 될 것으로 보이므로, 실제 적용에 있어서는 안전 및 보건 확보조치의무 위반 여부 및 그 위반과 사망사고 발생 간의 인과관계 입증 등이 주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6. 시사점 및 대응방안

중대재해처벌법의 의안 심의과정에서 관련 의무의 내용 등이 다소 완화·감축되기는 하였으나, 이번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은 중대재해 시 기업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을 강력히 처벌하여야 한다는 여론이 반영된 것이므로, 향후 산업계에 상당한 영향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의 법문상으로는 '경영책임자등'의 개념 규정이 명백하지 아니하여, 하위법령 입법, 관련 업무 누적 등을 통해 현장 실무 관행이 확립되기 이전까지는 대주주, 회장, CEO 등의 의사결정권자에 대한 고발이 있을 경우 상당부분 수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고용노동청이 1차 수사를 담당하는 산업안전보건법과 경찰이 수사를 담당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적용 선후에 관해 법리상 논란이 있을 수 있고, 양 기관의 수사가 병행하여 진행될 수도 있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고용노동청, 경찰, 검찰 등 관련 수사기관들에 대한 통일적이고 종합적인 대응을 위해 전문성 있는 변호인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은 해석상 논란이나 운영상 상당한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원칙적으로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어 향후 제정될 하위 법령 등을 즉각적으로 분석하여 이를 회사의 규정, 인력 및 예산에 반영하여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강화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신속하고도 면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저희 법무법인(유) 광장은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이슈를 포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Compliance 구축 및 점검, 산업재해와 관련된 자문 및 분쟁 대응 등에 관하여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언제든지 법무법인(유) 광장 산업안전·중대재해팀의 담당변호사에게 연락하여 주시면 각 기업별 상황에 맞는 최적의 법률서비스와 자세한 안내를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뉴스레터의 내용에 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상단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 뉴스레터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으로서, 법무법인(유) 광장의 공식적인 견해나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발송하는 뉴스레터를 원하지 않으시면 [\[수신거부\]](#)를 클릭해 주십시오.

**Lee & Ko** 법무법인(유) 광장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63 한진빌딩(우 04532) | Tel: 02-772-4000 | Fax: 02-772-4001/2 | [www.leeko.com](http://www.leeko.com)

뉴스레터 더 보기

COVID-19 자료실